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분류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교화 전문인력을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년수용자 의류의 품목을 성인수용자와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여 소년 교화에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년수용자 의류의 품목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3분”을 “5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화통화 방법, 절차, 수신자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교도관은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면서”를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녹음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는 직무상”으로,

“내용을”을 “전화통화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62조제4항”을 “영 제6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변호사가 영 제59조의2에 따라 수용자”로,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을 “다음”으로, “자료를 첨부하여”를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영 제59조의2제3항”을 “영 제59조의2에 따라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변호사 접견신청서

나.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별지 제32호서식의 변호사 접견신청서

제59조의6 중 “주·부식의”를 “주·부식”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 본문 중 “제260조에 따른 가석방”을 “가석방”으로,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관구”를 “수용관리팀”으로, “구역”을 “구역을 관리하는 단위조직”으로, “책임교도관”을 “팀장”으로 한다.

제8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제1항제1호 중 “5회”를 “20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회”를 “10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을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한다.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제93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회”를 “3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년 6개월 이하”를 “2년 6개월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간처우”를 “범죄 횟수가 1회, 중간처우”로, “9개월”을 “1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대상자의 선발절차는”을 “대상자 선발, 시설 종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편 제1장 제4절(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분류전담시설

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분류심사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분류전담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범죄의 피해가 크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수형자(이하 “고위험군 수형자”

라고 한다)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조정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이하 “정밀 분류심사”라고 한다)할 수 있다.

② 분류전담시설의 장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심의·의결 기구 설치 등) 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 분류심사를 위하여 분류전담시설에 심의·의결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설치, 심의·의결 대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편 제2장 제2절에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전문인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요건,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관리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형확정자와 소년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제162조제2항 중 “중앙통제실·관구실”을 “중앙통제실·수용관리팀 사무실”로 한다.

제179조제2항제1호 중 “일반포승으”를 “일반포승 또는 포승연결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연승줄”을 각각 “포승연결줄”로 한다.

제181조 단서 중 “중경비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를 “수용자에게”로 한다.

제214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2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제2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둘 이상의 금치를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하여 집행할 금치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5조제2항 중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를 “인정하면 수형자를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로,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을 “하여”로 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있다”를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은 제70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편지의 수신·발신”을 “전화통화”로 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심층면접) ① 위원회는 가석방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층면접(수형자 면담·심리검사, 관계인에 대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를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층면접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의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특수복·보조복·의복부속물·모자 및 신발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의류의 품목) ① ----- ----- ----- ----- ----- 다만, 소년수용자 의류의 품목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제품 검수) ①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공무원을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품 검수) ① ----- ----- ----- ----- ----- ----- 소비기한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 ----- ----- ----- ----- ----- ----- ---.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

1. ~ 5. (생략)

② (생략)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신설>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녹음)

①·② (생략)

③ 교도관은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화통화 녹음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 ①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5분 -----
----.

④ 전화통화 방법, 절차, 수신자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장관이 정한다.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녹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녹음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 전화통화정보를 -----.

④ -----
----- 영 제62조제4항 및 제5항---.

제29조의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 ① 변호사가 영 제59조의2에 따라 수용자-----
다음 -----
----- 구분에 따른 신청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
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가 영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59조의6(준용규정) 소년수용자
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부식의 등의 지급, 운동·
목욕, 전문의료진 등 및 작업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서와 자료를 -----.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가. 별지제32호서식의 변호사
접견신청서
나.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
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
할 수 있는 자료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별지
제32호서식의 변호사 접견
신청서

② 영 제59조의2에 따라 수용자
를 접견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

-----.

제59조의6(준용규정) -----

주·부식 -----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 (생략)

②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소장은 제260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등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한다. 다만,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 단서를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0조(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소재불명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등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가석방-----

----- 처우등급-----
-----.

-----.

④ (생 략)

제78조(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① ~ ③ (생 략)

④ 보안·작업 담당교도관 및 관구(교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용자의 적정한 관리 및 처우를 위하여 수용동별 또는 작업장별로 나누어진 교정시설 안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교도관은 서로 협의하여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해당 수형자에 대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점수를 채점한다.

제85조(봉사원 선정) ① ~ ③ (생 략)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용관리팀-----

----- 구역을 관리하는 단위
조직-- 팀장-----

-----.

제85조(봉사원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 <신 설>
3. 일반경비처우급 · 중(重)경비
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 ③ (생략)

제93조(중간처우) ① 소장은 개방 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 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 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
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
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
개월 이하인 사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 대상자 선발, 시설 종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
-----.

제4절 분류전담시설

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분류심사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분류전담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수형자(이하 “고위험군 수형자”라고 한다)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조정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이하 “정밀분류심사”라고 한다)할 수 있다.

② 분류전담시설의 장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심의·의결 기구 설치

<신 설>

제146조(외부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취업·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2. ~ 4. (생략)

②·③ (생략)

등) 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분류심사를 위하여 분류전담시설에 심의·의결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설치, 심의·의결 대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9조의2(전문인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요건,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6조(외부위원) ① -----

-----.

1. ----- 고용센터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구분수용 등) ① 사형확
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
용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생략)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관구실 그 밖에 교
도관이 계호하기에 적당한 장소
에 설치한다.

③ (생략)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제150조(구분수용 등) ① -----

----. 다만, 수용관리 또는 처
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집행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정시
설에 수용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형
확정자와 소년수용자를 같은 교
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
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앙통제실·수용관리팀 사무
실 -----

-----.

③ (현행과 같음)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현
행과 같음)

② -----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u>일반포승</u>으로 연결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u>연승줄</u>로 연결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u>연승줄</u>로 연결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u>중경비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u>	----- ----- ----- ----- -----. 1. ----- ----- <u>일반포승 또는 포승연결줄</u>----- 2. ----- ----- <u>포승연결줄</u>----- -- 3. ----- ----- <u>포승연결줄</u>----- --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 ----- ----- ----- ----- --. ----- ----- <u>수용자에게</u> ----- ----- -----
--	--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 17. (생략)

<신설>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 마. (생략)

5. (생략)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 ③ (생략)

<신설>

-----.

제214조(규율) -----

-----.

1. ~ 17. (현행과 같음)

18.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18호-----

가. ~ 마.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장은 둘 이상의 금치를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하여 집행할 금치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생략)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나. (생략)

다. 접견 및 편지의 수신·발신 내역

라. ~ 사. (생략)

<신설>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정하면 수형자를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
---- 하여 -----
-----.

제246조(사전조사) -----

-----.

-----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은 제70조를 준용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전화통화 -----

라. ~ 사. (현행과 같음)

제255조의2(심층면접) ① 위원회는 가석방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층면접(수형자 면담·심리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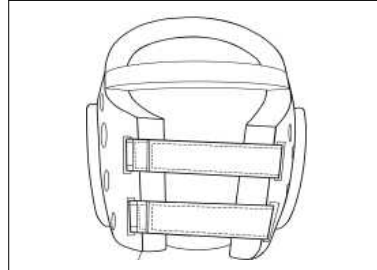
관계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를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층면접의 방
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현 행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보호장비의 규격 (제170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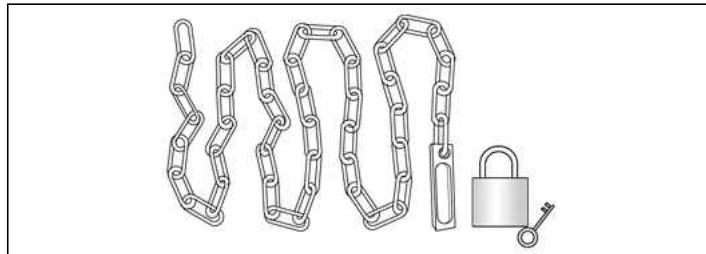
2. 머리보호장비



재 질	형 태	규 격	색 상	구 성
폴리 우레탄	헬멧	머리둘레: 55cm~65cm 두께: 1.5cm	<u>베이지</u>	· 후두부 중앙 고정장치 (2개 조임밴드) · 지름 3cm 미만의 환기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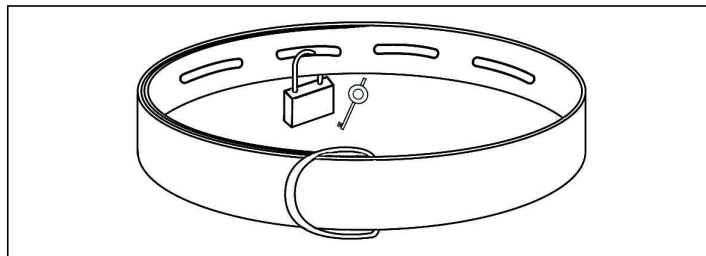
4. 보호대

가. 금속보호대



재 질	규격	구 성
스테인리스스틸	길이 <u>150cm 미만의</u> 고리 규격	· 수갑연결용 고리 · 안전자물쇠

나. 벨트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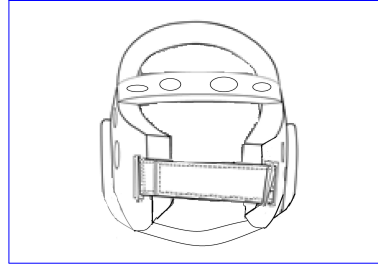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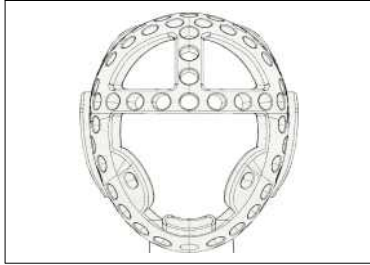
재 질	형 태	규 격	구 성
· 벨트: 폴리프로필렌 · 링: 스테인리스스틸	벨크로접착 띠	140cm×5cm	· 벨크로접착 띠가 부착된 중앙 분리형 벨트 · D형 고리 · 안전 자물쇠

개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보호장비의 규격(제170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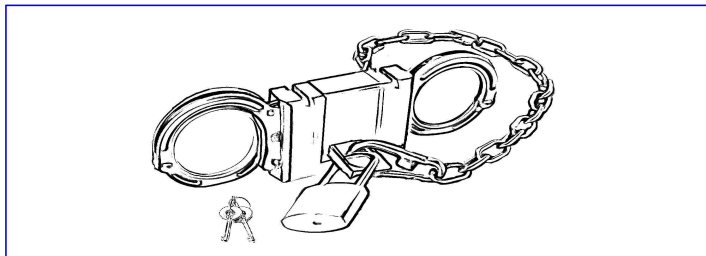
2. 머리보호장비



재 질	형 태	규 격	색 상	구 성
폴리 우레탄	헬멧	머리둘레: 55cm~65cm 두께: 1.5cm	대: <u>흑색</u> 중: <u>황색</u> 소: <u>청색</u>	·후두부 중앙 고정장치 (1개 조임밴드) ·지름 3cm 미만의 환기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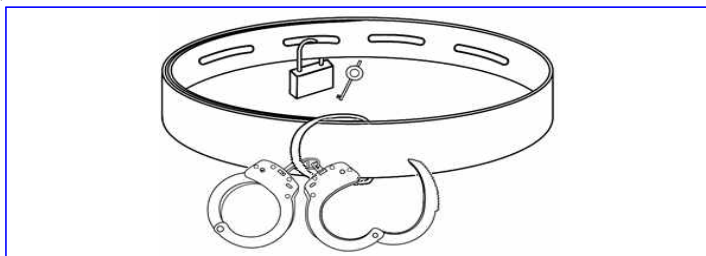
4. 보호대

가. 금속보호대



재 질	규격	구 성
· <u>고리</u> : 스테인리스스틸 · <u>수갑</u> :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길이 <u>180cm 미만</u> 의 고리 규격	· <u>양손수갑</u> ·수갑연결용 고리 ·안전자물쇠

나. 벨트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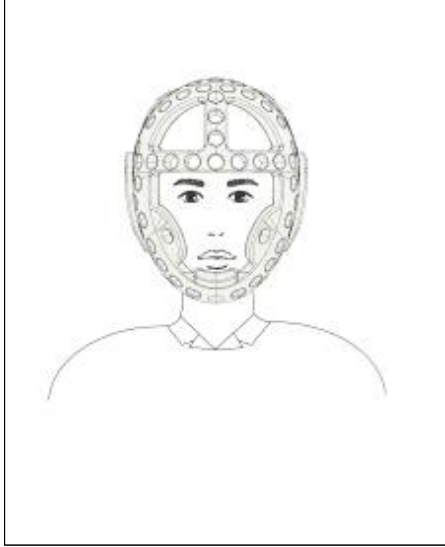


재 질	형 태	규 격	구 성
·벨트: 폴리프로필렌 ·링: 스테인리스스틸 · <u>수갑</u> :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벨크로접착 띠	140cm×5cm	· <u>양손수갑</u> ·벨크로접착 띠가 부착된 중앙 분리형 벨트 ·D형 고리 ·안전 자물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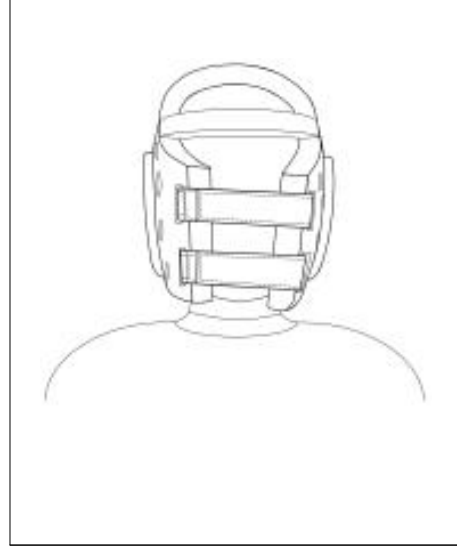
현 행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 (제173조 관련)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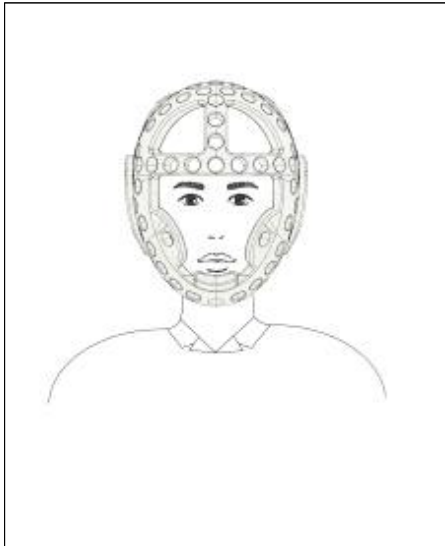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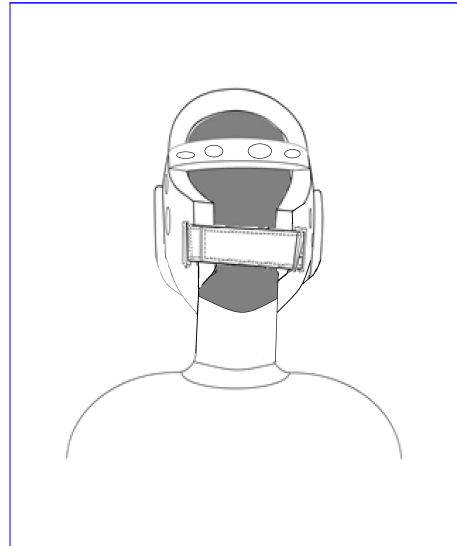
개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 (제173조 관련)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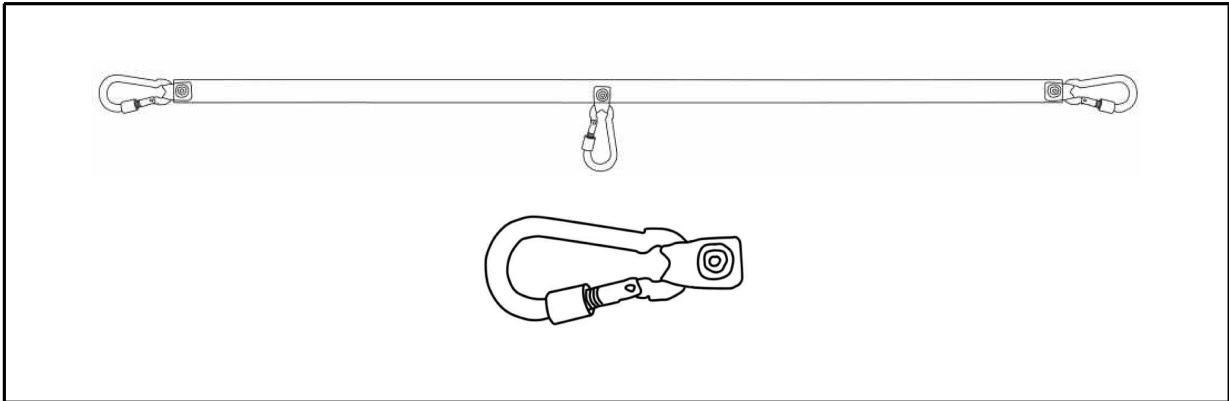


(뒷면)

현 행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

연승줄 (제179조제2항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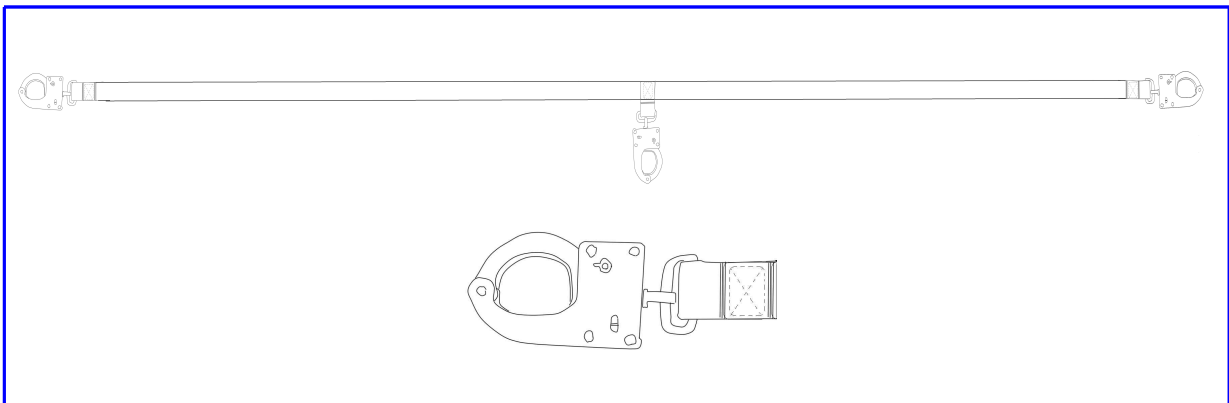


형태	재질	규격	구성
나일론 줄 양쪽 끝과 가운데에 <u>고리를 만들어 나사를 이용한 잠금 기능이 있는 카라비너(karabiner, 스프링이 달려 있는 강철로 만든 둥근 테)</u> 를 연결하여 최대 3인까지 연승할 수 있도록 함	• 줄: 나일론 • 카라비너: 아연도금 스틸	• 길이: 3m • 폭: 2cm • 두께: 2.5mm	• 줄: 1 • 카라비너: 3

개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

포승연결줄 (제179조제2항제2호 관련)



형태	재질	규격	구성
나일론 줄 양쪽 끝과 가운데에 <u>열쇠를 사용하여 잠금 기능이 있는 금속 고리를 연결</u> 최대 3인까지 <u>사용할 수 있도록 함</u>	• 줄: 나일론 • 금속고리: 두랄루민	• 길이: 3m • 폭: 2cm • 두께: 2.5mm	• 줄: 1 • 금속고리: 3

현 행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

수용자번호						성명	
기관명						범죄횟수	
경비처우급	급	급	급	급	급		
정기재심사	1/3재심사	1/2재심사	2/3재심사	5/6재심사			
부정기재심사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구분	월별	매우	양	보	개	불							
		양호	호	통	선 (노력) 요망	량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수형 생활 태도 점수 (5점)	품	1.0	0.8	0.6	0.4	0.2							
	행 책임감	2.0	1.6	1.2	0.8	0.4							
	협 동심	2.0	1.6	1.2	0.8	0.4							
작업 교육 점수 (5점)	근 면성	3.0	2.4	1.8	1.2	0.6							
	작업 교육 실적	2.0	1.6	1.2	0.8	0.4							
소 득 점 수													
심 사 점 수													
평 가 점 수													
소득점수 채 점 자	보안 담당 교도관												
	작업 · 교육 담당												
	교도관												
	관구책임교도관												
확 인 자	교정성적 담당												
	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120 g / m²)

개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

수용자번호						성명	
기관명						범죄횟수	
경비처우급	급	급	급	급	급		
정기재심사	1/3재심사	1/2재심사	2/3재심사	5/6재심사			
부정기재심사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구분	월별	매우	양	보	개선	불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양호	호	통	(노력) 요망	량							
수형 생활 태도 점수 (5점)	품	1.0	0.8	0.6	0.4	0.2							
	행	2.0	1.6	1.2	0.8	0.4							
	책임감	2.0	1.6	1.2	0.8	0.4							
작업 교육 점수 (5점)	협	2.0	1.6	1.2	0.8	0.4							
	동심	3.0	2.4	1.8	1.2	0.6							
	근면성	2.0	1.6	1.2	0.8	0.4							
작업 교육 점수 (5점)	작업	2.0	1.6	1.2	0.8	0.4							
	교육적												
	실적												
소 득 점 수													
심 사 점 수													
평 가 점 수													
소득점수 채 점 자	보안 담당 교도관												
	작업 · 교육 담당												
	교도관												
	수용관리팀장												
확 인 자	교정성적 담당												
	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120 g / m²)

현 행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변호사 접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
	소속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수용자 성명	수용번호	소송사건번호	접견일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용자 접견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위 수용자의 대리인 변호사

(서명 또는 인)

○○교도소(구치소)장 귀하

첨부자료	1. 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변호사 접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 소속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접견종류	[] 소송사건 [] 상소권회복청구 [] 재심청구 ※ 상소권회복 및 재심청구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부터는 ‘소송사건’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건은 월 4회, 상소권회복 및 재심청구 사건은 사건 당 2회로 접견횟수가 제한됩니다.

수용자 성명	수용번호	접견일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용자 접견신청을 합니다.

위 수용자의 대리인(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교도소(구치소)장 귀하

첨부자료 (소송사건인 경우에 한함)	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 80g/㎡]